

우리나라의 회석증권회계제도에 대한 논의*

- '98 기업회계기준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

이 창 우**

〈目 次〉

- | | |
|---------------------------|-------------------------|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V. 개정에 따르는 회계변경에 대한 논의 |
| II. 개정전 회계처리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 III. '98 기업회계기준개정안에 대한 논의 |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초안을 내어 놓았다. 이 새로운 개정초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비가 시급했던 회계기준 중 장단기 금융상품, 장단기 이연법인세차(대)에 대한 규정, 매출채권의 양도액 및 할인액에 대한 규정,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의 정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기준의 정비,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대한 규정과 용역매출에 대한 개념의 정리, 영업외손익에 대한 규정의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의 평가기준에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채권의 대손상각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투자주식에 대한 규정의 재정비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같은 기업회계기준 개정초안 중에서 특별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기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또 실무상의 적용자체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기업회계 개정안은 많은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새로운 개정안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며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기존의 회계기준에 대한 answer점은 유정근(1997)에 의하여 보고되어 있으나, 증권감독원(1998)도 개정안을 만들게 된 근거로서 전환가치 또는 신주인수권가치의 복잡성과 비분리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회계인식의 측면에서도 발행시점에만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문제, 상환할증금과 전환권대가의 비관련성 또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와의 비일관성, 투자사채 보유자와의 회계처리상의 비일관성, 보장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비관련성, 그리고 실무적 적용상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증권감독원은 개정안에서 제1안으로서 전환가치 또는 신주인수권가치의 무인식법을 도입하여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무인식법을 도입하는 경우 상환할증금은 만기일시지급 이자비용으로 보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기 미지급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때 사용하는 유효이자율은 발행가액과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원금과 이자의 현금흐름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이며, 전환시의 회계처리는 종전과 같이 발행가액법을 사용하고,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의 문제는 당기일괄처리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논리전개는 이같은 증권감독원의 제1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¹⁾.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개정전 회계처리의 내용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1998년도 기업회계기준 개정초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행하고 제4장에서는 개정에 따르는 회계법령에 대한 회계처리의 논의를 하며 제5장에서 결론을 맺으며 제언을 하고 있다.

II. 개정전 회계처리의 내용 및 문제점 분석

이곳에서는 기존에 적용되어오던 전환사채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하나의 회계사례를 들어 그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증권감독원(1998) 참조.

1. 분석사례 1

(내용)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00. 1. 1. 다음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발행

- 액면가액 : 10,000백만원
- 표시이자율 : 연 7%
- 보장수익률 : 연 12%(따라서 상환할증금은 원금의 16.87%임)
- 시장이자율 : 연 17%
- 발행가액 : 9,000백만원(할인발행)
- 이자지급방법 : 매 연도말에 후급
- 전환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1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채발행가액은 20,000원으로 한다.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부터 상환기일 30일전까지
- 상환기일(만기) : 2002. 12. 31.
- 원금상환방법 : 상환기일에 원금의 116.87%를 일시상환
 - 전화사채는 시장이자율, 전환조건, 전환권행사기간, A회사 주가, 배당금 등이 고려되어 할인발행되었음.
 - 2002. 1. 1. 액면 5,000백만원(발행가액 4,500백만원)의 전환청구

2. 개정전 현행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 1) 전환권대가의 계산: 이때의 할인율은 현행 예규53-31에 의하여 보장수익률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환권대가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발행가액		9,000
순수사채가액:		
원금의 현가: $10,000 \times 0.7118 (i=12\%, n=3)$	7,118	
이자의 현가: $700 \times 2.4018 (ia=12\%, n=3)$	1,681	8,799
전환권대가		201

- 2) 전환사채 거래에 대한 분개:

◇ 2000. 1. 1. 발행시:

(차) 현금	9,000	(대)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	전환권대가	201
전환권조정	201		

◇ 2000.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10,000 - 1,000 - 201) \times 12\% = 1,056$

(차) 이자비용	1,056	(대) 현금	700
		사채할인발행차금	296 ²⁾
		전환권조정	60

◇ 2000. 12. 31. 이자지급 후 대차대조표상의 표시: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296)		(704)
전환권조정: (201-60)		<u>(141)</u>
차감 계		9,155

◇ 2000.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9,155 \times 12\% = 1.99$

(차) 이자비용	1,099	(대) 현금	700
		사채할인발행차금	332 ³⁾
		전환권조정	67

◇ 2000. 12. 31. 이자지급 후, 전환직전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296)		(372)
전환권조정: (201-60-67)		<u>(74)</u>
차감 계		9,554
자본조정 중 전환권대가		201

◇ 2000. 12. 31. 전환청구로 신주식발행시: 상법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법 사용⁴⁾

(차) 전환사채	5,000	(대) 자본금	1,125
		주식발행초과금	3,375
		사채할인발행차금	186(372×1/2)
		전환사채전환이익	314
(차) 전환권대가	101	(대) 전환권조정	37
		기타자본잉여금	64

◇ 2002. 1. 1. 전환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86)
전환권조정		<u>(37)</u>
차감 계		4,777
자본조정 중 전환권대가		100

2) $*(1,056-700) \times 1,000 / (1,000 + 201) = 296$

$(1,056-700) \times 201 / (1,000 + 201) = 60$

3) $*(1,099-700) \times 1,000 / 1,201 = 332$

$*(1,099-700) \times 201 / 1,201 = 67$

4) 발행주식수 $4,500 / 20,000\text{원} = 225,000\text{주}$

자본금 $225,000\text{주} \times 5,000\text{원} = 1,125$

주식발행초과금 $4,500 \times 1,125 = 3,375$

◇ 2000.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4,777 \times 12\% = 573$

(차) 이자비용	573	(대) 현금	350
		사채할인발행차금	186 ⁵⁾
		전환권조정	37

◇ 2002. 12. 31. 이자지급후, 만기상환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0
전환권조정	0
차감 계	<u>5,000</u>
자본조정 중 전환권대가	100

◇ 2000. 12. 31. 만기상환시 현금상환액의 계산: $5,000 \times 116.87\% = 5,844$

(차) 전환사채	5,000	(대) 현금	5,844
전환권대가	100		
사채상환손실	744		

3. 현행기준의 문제점⁶⁾

5) $*(573-350) \times 1,000/1,201 = 186$

$*(573-350) \times 201/1,201 = 37$

6) 기존 기준의 문제점은 유정근(1997)에 의하여 지적이 되어왔고 최근에는 증권감독원(1998)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전문을 소개한다.

(1) 전환가치(신주인수권가치)의 복합성/비분리성을 미반영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사채로서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FASB133(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서도 이러한 견해와 일관되게, 전환사채발행회사가 부여한 주식발행에 대한 call option이 주가와 연동되어 있고, 투자자의 call option 행사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안에 내재된 call option을 인식하지 말도록 하고 있음.

(2) 발행시점에만 전환권(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인식

- 일반적으로 전환권(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하거나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바,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를 분리하여 인식하려면 파생상품으로서 전환권행사기간동안 그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이나, 현행 회계처리의 전환가치 인식은 최초 발행시에만 국한되어 불완전한 전환가치 인식법이 되고 있음.

(3) 상환할증금과 전환권대가의 비관련성

-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을 주기 위한 추가적인 이자지급으로서 순수한 의미의 전환권대가(전환사채 총 현금흐름현가-발행가액)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임.

-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할증금의 현가만큼만을 전환권대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진정한 전환권대가를 인식하기 보다는 만기상환시 상환할증금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자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위에서 설명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상환할증금은 전환권대와 이론적인 관련성이 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데도 기존의 회계기준에서는 상환할증금의 현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권대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에 전환권대가를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하여 회계처리의 비일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전환사채의 발행회사는 전환권대가를 상환할증금의 현가로서 계상하게 되므로 거래의 상대방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사채의 회계처리와 비일관성이 발생한다. 또 하나의 이론적인 문제점으로는 보장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비관련성을 들 수 있는데, 보장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예규는 전

(4)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와의 회계처리 비일관성

- 기존 해석53-32에서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가치무인식법을 채택하도록하고 있으나,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까지 전환권대가를 인식하도록하고 있음.
- 그 결과 전환권대가인식법인 현행기준하에서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에 진정한 전환권대가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는 당해 전환권대가가 차후 지급해야할 상환할증금을 이자비용으로서 인식하는 것일 뿐 추가지급의무가 없는 무조건부 전환권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환권대가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5) 투자사채 보유자 회계처리와의 비일관성

-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전환권대가를 상환할증금현가로서 계상하게 됨으로써 반드시 사래 상환시에는 현가와 할증금차액을 상환손실로 인식하게 되는데 반하여, 투자자는 투자사채가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환할증금총액으로 계상하게 되어 할증금수령시 투자사채가액과 정확히 일치하게되는 바, 양 당사자간에 불일치가 발생함.
- 이는 기본적으로 상환할증금을 전환권대가로 보기 때문임.

(6) 보장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비관련성

- 전환사채도입 초기에는 그 인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장수익률 만큼 보장수익률(상환할증금)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장수익률이 5%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시장수익률은 15-0%인 바, 이 경우에도 보장수익률을 시장수익률의 대응치로 쓰는 것은 전환가치인식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임.

(7) 재발행시 전환권대가는 최초발행시 보장수익률과 전혀 상관이 없음

- 전환사채발행후 일시적으로 자기사채로 보유한 후 다시 유통시장에서 매각한 경우 회계처리상 할인 또는 할증발행이 일어나게 됨.
- 이는 전혀 새로운 사채의 발행으로서(발행가액이 달라졌으므로) 최초 발행가액을 기준으로한 보장수익률은 재발행시의 전환권대가(신주인수권대가)와 전혀 관계가 없으나, 해석에는 액면발행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관계로 실무적으로 최초발행시의 보장수익률로 재발행(재매각)시의 전환권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함.

(8) 실무적 적용상의 어려움

-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복잡함.
- 특히 전환사채를 취득후 재발행하는 경우 할인/할증발행 사례가 나타나게 되어 전환권조정계정과 사채 할인/할증차금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매우 복잡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함.

환권대가와 일반사채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상 발생하는 어려움으로서, 전환사채를 재취득하여 재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문제를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Ⅲ. '98 기업회계기준개정안에 대한 논의

증권감독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우선 전환가치 또는 신주인수권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무인식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제1안으로서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행과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⁷⁾. 이같이 전환권가치의 무인식법을 도입하는 경우 상환할증금의 회계처리는 제1안으로서 상환할증금을 만기일시지급 이자비용으로 보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매기 미지급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시에는 이익으로, 만기상환시에는 미지급이자비용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2안은 상환할증금을 미확정부채로 보아, 전환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없고 상환시에는 일시비용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무인식법을 도입하는 경우 유효이자율의 개념은 발행가액과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원금/이자현금흐름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시장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사채와 관련된 현가의 계산에 미래의 현금흐름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되므로 이는 문제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는 상법의 규정에 충실한 발행가액법과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부가액법 및 시가법을 들 수 있다. 증권감독원은 제1안으로서 발행가액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회계기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⁹⁾.

7) 이 대안은 실제로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회계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8)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9)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안: (발행가액법)

상법 제348조에 따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최초발행시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고,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과 상환할증금 미지급이자비용 기인식액은 전환시 당기손익(전환사채전환손익)으로 반영한다.

1. 전환가치 무인식법¹⁰⁾

개정 기업회계기준 초안에서의 보장수익률은 사채의 원금, 상환할증금 및 총이자지급액의 현가를 당해사채의 액면가액과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의 개념이다. 따라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상환할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보장할 수익률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상환할증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보장수익률을 사용하여 상환할증금을 계산함)

액면가액 = 현금이자의 현가 + 원금의 현가 + 상환할증금의 현가

$$10,000 = PV(700, 12\%, 3년) + PV(10,000, 12\%, 3년) + PV(X, 12\%, 3년)$$

이때 양변을 일치시키는 내부수익률을 계산하면 상환할증금액은 1,687백만원이 된다. 이러한 상환할증금의 성격은 수익률 12%를 보장하기 위한 만기일시 지급액이며, 매년 지급하는 현금이자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향후 이자비용으로써 만기시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한편, 보장수익률의 개념과는 별도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기 위한 유효이자율의 계산은 전환사채의 원금, 총이자지급액 및 상환할증금의 현재가치를 발행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 되는데, 위의 사례에서 발행가액 9,000백만원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유효이자율은 시행착오법을 통한 계산을 통하여 계산하여 보면 16.27%가 된다.

이상과 같은 기초자료를 근거로하여 위의 사례에 대한 전환가치 무인식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2000. 1. 1. 전환사채 발행시:

(차) 현금	9,000	(대)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00		

제2안: (장부가액법)

전환시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가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따라서 전환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제3안: (시가법)

발행주식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시가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10) 여기에서 제시된 회계처리는 증권감독원이 사례로 제시한 풀이방법이다. 이를 주석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본 논리의 논리전개상 불가피하여 본문에 포함시킨다.

◇ 2000.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아래 상각표 참조

(차) 이자비용	1,464	(대) 현금	700
		사채할인발행차금	284
		장기미지급이자비용	480 ¹¹⁾

◇ 2002.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16)
차감 계	9,284
장기미지급이자비용	480

◇ 2000. 12. 31. 이자지급시

(차) 이자비용	1,589	(대) 현금	700
		사채할인발행차금	331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58

◇ 2002. 12. 31. 이자지급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385)
차감 계	9,615
장기미지급이자비용	1,038

11) ◇ 만기상환을 가정한 할인차금상각표(유효이자율법 사용)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기초장부가액(A)	9,000	9,764	10,653
총이자비용(B=A×16.27%)	1,464	1,589	1,734
현금이자(C)	700	700	700
순이자비용(D=B-C)	764	889	1,034
사채할인차금상각액(E)	284	331	385
장기미지급이자비용계상액(F)	480	558	649
기말 장부가액(G=A+D)	9,764	10,653	11,687

위에서 순이자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총액과 상환할증금의 비율에 따라 각각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과 장기미지급이자비용인식액으로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764 \times 1,000 / (1,000 + 11,687) = 284$$

$$*764 \times 1,687 / (1,000 + 11,687) = 480$$

◇ 2002. 1. 1. 전환청구로 신주식발행시

(차) 전화사채	5.00	(대) 자본금	1,125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19	주식발행초과금	3,375 ¹²⁾
		사채할인발행차금	193
		전환사채전환이익(P/L)	826

개정초안에 따르면, 상법에 따라 전환사채의 발행가액(4,500백만원)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산정하므로, 동 금액만큼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전환시점 이전까지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과 미지급이자비용 인식액 중 전환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2002. 1. 1. 전환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92)
차감 계	<u>4,808</u>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19

◇ 2002. 12. 31. 이자지급시¹³⁾

(차) 이자비용	867	(대) 현금	350
		사채할인발행차금	192
		장기미지급이자비용	325

◇ 2002. 12. 31. 이자지급후 만기상환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u>0</u>
차감 계	5,00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844

12) *발행주식수: $4,500/20,000\text{원} = 225,000\text{주}$

자본금: $225,000\text{주} \times 5,000\text{원} = 1,125$

주식발행초과금: $4,500 - 1,125 = 3,375$

13) ◇ 전환후 잔존 전환사채에 대한 상각표(유효이자율법 사용, 단위:백만원)

	2002년
기초장부가액(A)	5,327
총이자비용(B=A×16.27%)	867
현금이자(C)	350
순이자비용(D=B-C)	517

◇ 2000. 12. 31. 액면 5,000백만원의 만기상환시

현금상환액	: 5,000 × 116.87% = 5,844		
(차) 전환사채	5,000	(대) 현금	5,844
장기미지급이자비용	844		

2.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곳에서 설명된 개정안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존의 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많이 개선되어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변화가 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우선 무인식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약하다고 보여진다. 즉, 이론적으로 전환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식법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등이 분리되어 양도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신주인수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환가치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인식하느냐의 여부의 회계처리는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 증권감독원이 제시한 회계처리사례를 보면 상환할증금에 대한 정보는 전환사채의 발행 시점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는 증권감독원의 제안은 이론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이는 사채권자가 사채를 만기시까지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이 제공하여야 하는 보장된 금액이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의 계산에서도 현가의 계산에 포함되었듯이 전환사채 금액의 표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환사채의 액면가와 상환할증금의 분리에 대한 정보는 주석사항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회계적 문제는 기간별 인식에 대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인식하게 되어있는 회계처리는 이 상환할증금의 지급에 대한 의무는 사채권자가 만기시까지 사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면에서 좀 더 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증권감독원이 제시한 회계처리를 보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두 용어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이들의 차이는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비밀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 제시된 시장이자율 연 17%는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시장이자율은 유효이자율인 16.27%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전환시의 회계처리에 계속하여 발행가액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즉, 이 문제는 상법의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 발행가액법이 아닌 장부가액법이

나 시가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3. 추가적 고려사항: 전환가치 인식법

이곳에서는 위의 사례를 기초로하여 전환가치를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장수익률 12%에 의한 상환할증금은 1,687백만원이며 시장이자율은 17%이다.

1) 일반사채 및 전환권의 가치계산(단위:백만원)

(i) 일반사채의 가치

액면가액의 현재가: $10,000 \times 0.625 (i=17\%, n=3)$	6,250
상환할증금의 현재가: $1,687 \times 0.625 (i=17\%, n=3)$	1,054
표시이자의 현재가: $700 \times 2,210 (ia=17\%, n=3)$	1,547
계	8,851

(ii) 전환권의 가치: $9,000 - 8,851 = 149$

2) 회계처리: (단위: 백만원)

◇ 2000. 1. 1. 전환사채 발행시

(차) 현금	9,000	(대) 전환사채	11,687
사채할인발행차금	2,836	전환권대가	149
		(또는 기타자본잉여금)	

◇ 2000. 12. 31. 이차지급시¹⁴⁾

(차) 이차비용	1,505	(대) 현금	700
		사채할인발행차금	805

14)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표의 작성

연도	기초가액	유효이자(17%)	표시이자	상각액	기말가액
2000	8,851	1,505	700	805	9,656
2001	9,656	1,641	700	941	10,597
2002	10,597	1,790	700	1,090	11,687
계		4,936	2,100	2,836	

◇ 2000.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1,687	
사채할인발행차금(2,836-805)		(2,031)	
차감 계		<u>9,656</u>	
전환권대가		149	
◇ 2001. 12. 31. 이자지급시			
(차) 이자비용	1,641	(대) 현금	700
		사채할인발행차금	941
◇ 2001.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1,687	
사채할인발행차금(2,031-941)		(1,090)	
차감 계		<u>10,597</u>	
전환권대가		149	
◇ 2002. 1. 1. 전환청구로 신주식 발행시			
(차) 전환사채	5,844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545
전환권대가	75	자본금	1,125
		주식발행초과금	3,375
		기타자본잉여금	75
		전환사채전환이익	799
◇ 2001. 1. 1. 전환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843	
사채할인발행차금		(545)	
차감 계		<u>5,298</u>	
전환권대가		74	
◇ 2002. 12. 31. 이자지급시 ¹⁵⁾			
(차) 이자비용	895	(대) 현금	350
		사채할인발행차금	545

15)

◇ 전환후 상각표					
연도	기초가액	유효이자(17%)	표시이자	상각액	기말가액
2002	5,298	895	350	545	5,843

◇ 2002. 12. 31. 이자지급후 상환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843	
사채할인발행차금		0	
차감 계		5,843	
전환권대가		74	
◇ 2002. 12. 31. 액면 5,000백만원의 만기상환시			
(차) 전환사채	5,843	(대) 현금	5,843
전환권대가	74	기타자본잉여금	74
(또는 기타자본잉여금)		(또는 자산수증익)	

IV. 개정에 따르는 회계변경에 대한 논의

1. 분석사례 2

(내용)
'97. 1. 1. 다음의 조건으로 전환사채 발행
· 발행가액: 액면 10,000백만원(액면발행)
· 표시이자율: 연 7%
· 이자지급방법: 매 연도말에 후급
· 전환가격: 20,000원/주, 주식의 액면가 = 주당 5,000원
·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후 1개월 경과일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 상환기일(만기): '99. 12. 31
·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원금의 116.87%를 일시상환(보장수익율 12%)
· '99. 1. 1. 액면 5,000백만원의 전환청구

2. 회계처리에 대한 논의

1) 현행 예규에 의한 회계처리(단위:백만원)¹⁶⁾

◇ 1997. 1. 1. 전환사채 발행시			
(차) 현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	1,201	전환권대가	1,201

16) 여기에서 제시되는 회계처리는 예규53-31에 의한 회계처리이다.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본 논문의 전개를 위하여 본문 안에 소개하기로 한다.

◇ 1997.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8,799 \times 12\%$ (보장수익률) = 1,056			
(차) 사채이자	1,056	(대) 현금	700
		전환권조정	356

◇ 1997.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1,201-356)	<u>(845)</u>
차감 계	9,155
자본조정 중 전환권대가	1,201

◇ 1998.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9,155 \times 12\% = 1,099$

(차) 사채이자	1,099	(대) 현금	700
		전환권조정	399

◇ 1998.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0,000
전환권조정:(1,201-356-399)	<u>(446)</u>
차감 계	9,554
자본조정 중 전환권대가	1,201

◇ 1999. 1. 1. 전환청구로 신주식 발행¹⁷⁾

(차) 전환권대가	601	(대) 전환권조정	223(446×1/2)
		기타자본잉여금	378

(차) 전환사채	5,000	(대) 자본금	1,250
		주식발행초과금	3,750

◇ 1999. 1. 1. 전환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전환권조정	<u>(223)</u>
차감 계	4,777
전환권대가	600

◇ 1998.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4,777 \times 12\% = 573$

(차) 사채이자	573	(대) 현금	350
		전환권조정	223

17) * 전환권대가 감소액 : $1,201 \times 5,000/10,000 = 601$

발행주식수 : $5,000\text{백만원}/20,000\text{원} = 250,000\text{주}$

자본금 : $250,000\text{주} \times 5,000\text{원} = 1,250\text{백만원}$

◇ 1999.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전환권조정	0	
차감 계	5,000	
전환권대가	600	

◇ 1998. 12. 31. 이자지급시 현금상환액: $5,000 \times 116.87\% = 5,844$

(차) 전환사채	5,000	(대) 현금	5,844
전환권대가	600		
사채상환손실	244		

2) '98 개정초안에 의한 회계처리(전환가치 무인식법, 단위:백만원)

◇ 유효이자율의 계산

발행가액 = 현금이자의 현가 + 원금의 현가 + 상환할증금의 현가

$$10,000 = PV(700, \text{연금}, n=3) + PV(10,000, n=3) + PV(1,687, n=3)$$

위의 관계식에서 유효이자율은 12%가 된다.

◇ 1997. 1. 1. 전환사채의 발행시

(차) 현금	10,000	(대) 전환사채	10,000
--------	--------	----------	--------

◇ 1997.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10,000 \times 12\% (\text{유효이자율}) = 1,200$

(차) 이자비용	1,200	(대) 현금	70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00

◇ 1997.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0,00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00

◇ 1998.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10,000 + 500) \times 12\% = 1,260$

(차) 이자비용	1,260	(대) 현금	70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60

◇ 1998. 12. 31.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10,00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1,060

◇ 1999. 1. 1. 전환사채의 전환시

(차) 전환사채	5,000	(대) 자본금	1,125
장기미지급이자비용	530	주식발행초과금	3,50
		전환사채전환이익	530

◇ 1999. 1. 1. 전환후 대차대조표 표시

전환사채	5,00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1,060-530)	530

◇ 1999. 12. 31. 이자지급시 사채이자의 계산: $(5,000 + 530) \times 12\% = 664$

(차) 이자비용	664	(대) 현금	350
		장기미지급이자비용	314

◇ 1999. 12. 31. 만기상환시

(차) 전환사채	5,000	(대) 현금	5,844
장기미지급이자비용	844*		

$$*530 + 314 = 844$$

3) 회계변경

증권감독원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변경에 대하여 당기일괄처리법과 전진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제1안인 당기일괄처리법은 우선 액면발행된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전환권대가 및 전환권조정(또는 신주인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조정)을 상계하여 그 잔액을 미지급이자비용에 계상하고, 동잔액과 개정기업회계기준을 발행시부터 적용했을 경우의 미지급이자비용과의 차액을 추가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계상하며, 또 액면발행된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는 개정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전환권대가 및 전환권조정(또는 신주인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조정)을 상계한 후 그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제2안인 전진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개정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발행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회계변경의 처리과정을 보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각각의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당기일괄처리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만약 1998년도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전환권대가 및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계하여 그 잔액을 미지급이자비용에 계상한다.

(차) 전환권대가	1,201	(대) 전환권조정	845
		미지급이자비용	356

② 동 잔액과 개정기준을 발행시부터 적용했을 경우의 미지급이자비용과의 차액을 추가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미지급이자비용으로 계상한다. 이때 인식하여야할 미지급이자비용의 금액은 개정초안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 인식하여야할 500백만원에서 위에서 계상된 35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44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이익잉여금	144	(대) 미지급이자비용	144
-----------	-----	-------------	-----

여기에서 계상된 미지급이자비용 144백만원은 현행회계기준에 의한 이자비용 인식액인 1,056백만원에서 개정초안을 97회계연도에 적용했을 경우에 인식하여야할 이자비용인 1,2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나)의 분개는 현행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개정초안에 따라 모두 수정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만약 1999년도 즉, 전환사채의 전환직전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 전환권대가	1,201	(대) 전환권조정	446
이익잉여금	305	장기미지급이자비용	1,060

여기에서 계상된 이익잉여금 305백만원은 97회계연도의 이자차이인 144백만원과 98회계연도의 이자차이인 161백만원(1,260-1,099)의 합계금액이 된다.

V. 결론 및 제언

기존의 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즉, 상환할증금은 전환권대와 이론적인 관련성이 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데에도 기존의 회계기준에서는 상환할증금의 현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권대가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에 전환권대가를 인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하여 회계처리의 비일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전환사채의 발행회사는 전환권대가를 상환할증금의 현가로서 계상하게 되므로 거래의 상대방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사채의 회계처리와 비일관성이 발생한다. 또 하나의 이론적인 문제점으로는 보장수익률과 시장수익률의 비관련성을 들 수 있는데, 보장수익률을 할인률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예규는 전환권대와 일반사채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상 발생하는 어려움으로서, 전환사채를 재취득하여 재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처리의 문제를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 설명된 개정안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존의 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많이 개선되어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변화가 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우선 무인식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론적인 뒷받침이 약하다고 보여진다. 즉, 이론적으로 전환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식법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분리되어 양도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신주인수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환가치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인식하느냐의 여부의 회계처리는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또 증권감독원이 제시한 회계처리사례를 보면 상환할증금에 대한 정보는 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장기미지급비용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는 증권감독원의 제안은 이론적을 볼 때 두 가지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 즉, 이는 사채권자가 사채를 만기시까지 소유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이 제공하여야하는 보장된 금액이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의 계산에서도 현가의 계산에 포함되었듯이 전환사채 금액의 표시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환사채의 액면가와 상환할증금의 분리에 대한 정보는 주식사항 등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회계적 문제는 기간별 인식에 대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인식하게 되어있는 회계처리는 이 상환할증금의 지급에 대한 의무는 사채권자가 만기시까지 사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면에서 좀 더 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증권감독원이 제시한 회계처리를 보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 두 용어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며 이들의 차이는 미래현금흐름의 현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의 비밀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 제시된 시장이자율 연17%는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시장이자율은 유효이자율인 16.27%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전환사의 회계처리에 계속하여 발행가액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즉, 이 문제는 상법의 규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통하여 해결이 되어야 하며, 이는 외국의 경우 발행가액법이 아닌 장부가액법이나 시가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송인만, 윤순석(1997), 「중급회계(제3판)」, 서울:신영사.
- 유정근(1997),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월간공인회계사」, 1997, 12월호.
- 증권감독원(1998), 「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